

# 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1. 잊혀진 이슈, 잊혀진 囚人

“잊혀진 이슈.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사라지길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던 논쟁입니다. 양심수 문제입니다. 국내인권단체들은 그 수를 980여명이 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매년 거론하고 있으나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문민은 문명을 말합니다. 스스로 문명국가임을 자리매김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 -”(박준영, 시사월간 WIN, 1997.10)

## 2. 최근의 양심수 논쟁

-- 논쟁의 전개와 진전

### (1) 양심수와 공산주주의 지지자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 - -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되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김대중 총재의 1997.10.31자 저녁 광주지역 TV토론)

### (2) 공안기관은 비양심집단?

“김총재의 발언은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 - ‘조국을 사랑한 사람’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사면을 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풀려나고 사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 - - -공안사범들을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풀어준다면 그동안 체제를 지켜온 공안기관들은 비애국적, 비양심적 집단이라는 얘기가냐”(검찰관계자의 직후 논평, 1997.11.1자 조선일보 1면기사)

### (3) 대통령과 검찰, 누가 더 센가?

“공산당이 아니면서 앰네스티 기준으로 그동안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요구해온 사람이 검토의 대상이며 그경우에도 검찰의 심사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김대중 총재의 11.2자 평화방송 대담)

### (4) 민주주의 가치부정은 누가?

“여야의 양심수 공방이 김대중 총재의 사상시비로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신당은 3일에도 김총재의 사상성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신한국당 김영일 기초위원장은 ‘김총재의 발언은 자신에게 내재된 이념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며 ‘김총재 사상 문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세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 - -국민신당의 이인제 전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을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거들었다.”(1997.11.4 중앙일보)

### (5) 좌경적 견해 가진 자도 양심수?

“좌경적 견해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한국의 많은 죄수들이 양심수의 범주에 들어간다. - - -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금된 모든 죄수들이 폭력을 지지했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 -지난 61년 양심수의 개념을 이미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는 유엔등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심수는 폭력을 지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뜻한다. - - -한국에서는 올해만도 50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폭력이 아니라) 단지 고무찬양과 이적행위만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1997.11.4자 AMNESTY INTERNATIONAL 성명서, 1997.11.5자 한겨레신문기사)

### (6) 양심수 그림자도 없는 문민정부?

“양심수 문제는 과거 억압구조 아래서는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문민정부하에서는 문제가 안된다. - - 문민정부 이후에는 억압체제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다. - - - 내부신념을 폭

력으로 표현해 법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양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11.4자 국민신당창당 직후의 이인제후보의 기자회견)

### (7) 정치물을 덜 들어?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석방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검찰.법무부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가 2일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라면 정치인 사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혀 대선을 앞둔 각 후보들의 양심수 논쟁이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다. - - -이총재의 이날 발언은 - - -김총재의 발언을 곧바로 색깔론으로 몰고간 이사철 대변인의 전날 성명이나 양심수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 -그러나 이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다시 ‘양심수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해명하고 나서 - - -”(1997.11.3자 한겨레신문기사)

## 3. AMNESTY INTERNATIONAL과 양심수 개념의 발전

### (1) 양심수의 정의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

Considering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freely to hold and to express his or her convictions and the obligation to extend a like freedom to others, the object of Amnesty International shall be to secure throughout the world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y:

a) irrespective of political considerations working towards the release of and providing assistance to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aforesaid provisions are imprisoned, detained or otherwise physically restricted by reason of their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or by reason of their ethnic origin, sex, colour or language, provided that they have not used or advocated viol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soners of Conscience');

b) opposing by all appropriate means the detention of any Prisoners of Conscience or any political prisoners without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any trial procedures relating to such prisoners that do not confirm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rms;

이것은 1979년 9월 6일에서 9일 사이 벨기에 Leuven 회의에서 제12차 국제위원회(12th International Council)에서 채택한 규약(Statute of Amnesty International)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수 조항이다. 이 규정에서 양심수의 조건은 두가지이다. 첫째,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advocate은 단순히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폭력을 선동하거나 폭력에 호소함을 뜻한다. 둘째, 신념.언어.국적.인종.경제적지위등으로 인하여 감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념이라 함은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의 양심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앰네스티가 석방운동을 벌이는 대상은 단순히 양심수만이 아니라 는 사실이다. 기타의 정치범이라 할지라도 앰네스티는 그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정하는 적법절차를 유린당한 경우에는 석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유럽인권협약등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명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제적인 관습법이 된 여러 규범들을 포함한다.

## (2) Nelson Mandela의 Case

그러나 1964년 Nelson Mandela를 둘러싸고 내적인 논쟁을 야기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해 그 악명높은 Robben Island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 직전인 1962년 그가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를 조직하고 여권없이 출국하려 하였다는 혐의에 직면하였을 때 그는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그는 근 10년째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비폭력투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여러차례 그는 집회를 저지당했고 그의 운동에 제한이 가해졌다. 1964년 그는 사보타지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그룹들은 현정부에 대한 폭력적 반대로의 전환이 그를 이제 더 이상 양심수로 지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심각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마침내 Amnesty가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압도적 다수가 Amnesty는 폭력을 사용하였거나 선도한 사람을 양심수로 지정할 수 없다는 앰네스티의 기본원칙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많은 앰네스티 회원들은 살아서 돌아올 희망을 잃어버린 만델라를 포기한 이 결정에 불만이였다. 마침내 타협안에 도달하였다. 만델라는 더 이상 양심수는 아니었지만 앰

네스티는 그 재판이 불공정하고 고문이 사용되었거나 수형조건이 가혹하다면 당국에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타협은 그 후 여러차례 사용되었고 논쟁의 원천으로 남았다.(Jonathan Power, Against Oblivion, Fontana Paperbooks, 1981, London, p.23-24)

### (3) 폭력개념을 둘러싼 논쟁

앰네스티는 폭력의 이슈에 관한 기나긴 논쟁을 치렀다. 그 죄목이 어떠한간에 공정한 재판과 인간적 대우를 위해 다룰 것임을 그때마다 끊임없이 확인하였다. 한편,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였거나 선도한 활동으로 그가 객관적으로 기소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 죄수의 석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앰네스티의 입장을 요약한 노트에서 앰네스티가 어떤 조건하에서도 폭력을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입장은 전적으로 공평하다. 앰네스티는 많은 회원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일반적 경제, 사회 또는 정치적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다만 부정의 개인적 희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뿐이다. -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경찰이나 감옥당국이 폭력이나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르고도 처벌받고 있지 않고도 그런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중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초연함(above the fray) 입장은 실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앰네스티 문건들을 정독해 보면 예컨대 중남미에 있어서 앰네스티는 不義의 일반적 상태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엘살바도르나 구아테말라에서의 정치적 폭력은 정치체제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그렇나 훌륭하고 명쾌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호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Jonathan Power, 위의 책, p.24)

문 : 정부당국은 일부 정치범 가운데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의 폭력성을 강조해 왔는데.

답 : 만약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다 구속되었다면 양심수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수로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억압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1997.11.4자 한겨레신문의 방한중 국제사면위 집행위원 Ross Daniels와의 인터뷰)

## 4. 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한 양심수의 지정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국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Research Department, Programme Department 그리고 Administrative Department 가 그것이다. 첫째의 Research Department가 가장 크다. 이 부서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과 중동을 관할하는 5개 지역별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기획과 연구기능의 조정을 총괄하는 장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부서는 사적 또는 공적인 광범한 접촉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조사기능을 준비하고 참여한다. 또한 관심을 둔 특정국가 안에서의 사태발전에 대한 밀착주시를 유지하고 각 지역의 보도를 모니터한다. (Yogesh Kumar Tyagi, Human Righ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A Case Study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Philosophy of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1979, p.66)

이 조사국에서 수집·분석된 자료에 따라 앰네스티 규약이 정하는 양심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그 판단이 이루어지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그룹이 그 양심수를 지정(adopt)하게 하고 동시에 각 그룹은 그 양심수에 대한 서류(prisoner dossier)를 받는다. 이것은 인쇄된 파일로서 주로 case sheet, confidential information sheet, statute of case sheet, 일반 지시사항, 권고된 행동, 구조활동, 정부기구리스트 그리고 배경자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한국의 양심수

### (1) 법무부·검찰의 주장과 그 근거 비판

— 실정법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국제사회의 입장

한국에는 양심수가 진정으로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먼저 양심수의 존재를 먼저 살펴본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는 물론 위에서 본 대로 앰네스티의 규정에 따른다.

검찰과 법무당국은 문제의 수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양심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실정법의 존재와 위반여부는 전혀 기준

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적법절차가 취해졌느냐 하는 점이다. 아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즉결처형(extra-judicial execution)하거나 인민재판식의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처형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실제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한 실정법의 혐의하에 기소하여 형식적으로 재판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형, 투옥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모두 양심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법이나 절차법이 과연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제의 한국의 수인들에게 부과된 혐의는 대부분 국가보안법이고 이 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세계 유명 NGO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 아무리 위반되었음이 증명되고 외형상 합법적 재판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앰네스티가 정의한 양심수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참고로 유엔과 NGO들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적는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포함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과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비폭력적 정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법의 조항은 제거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적이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1)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당국은 이 법을 침묵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정치적 목적에 남용할 수 있다. 앰네스티는 한반도의 분단에 따라 야기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코 안보관련 법률의 제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Political Parties on the Occasion of the April 1996 National Assembly Elections)

## (2) ‘실정법 위반자’의 실체

- 조문주장, 교과서집필이 폭력인가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남한사회에서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최대의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의 신공안정국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사

1.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은 단순히 고무, 찬양, 동조와 이적행위조항만이 아니다. 국가기밀수집, 누설 조항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이러한 애매한 조항과 사법부의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에 의해 단순히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는 것(신귀영사건), 한국인 자장면을 즐겨이 먹는다는 사실과 동아일보의 연감등 신문기사들(황대권사건)도 모두 국가기밀로 판단된 점을 참고하면 모든 사실이 자명해 진다.

망 직후에 경찰,公安검찰, 집권당과 극우언론은 소위 주사파학생들을 공격하는데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매카시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량적이고 무차별적인 구속의 관행이 되살아났다. 금년 6,7월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자의 수는 102명으로 1993년 전체의 구속자 수인 104명에 육박하였다. 특히 대학에서 4년간 강의교재로 사용되어 온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집필교수들이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저자 불명의 미출판원고, p.2)

- 태백산맥도, 희망의 노래도

"80년대 한국문학사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소설 태백산맥의 기소여부에 대한 논란이 최근 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공안부로 부터 이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1부 조규홍검사는 태백산맥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는 지난 4월 노래집 <희망의 노래>를 만들었다가 도서출판 민맥 대표 원용호씨와 함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가 적용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상창, 시사뉴스 96.8.7자)

### (3) 양심수의 정리

-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다
- 적용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
- 당시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중립적, 독립적이지 못하였으며 공정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로버트케네디 인권센터의 제임스 실크씨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인권하루소식 제461호, 1995.8.9자)

- 수형생활이 가혹하고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44년째 수감중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지금은 석방됨) 등 20년 이상을 복역중인 양심수가 26명이며 60-70세 이상의 고령자도 50여명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구금하고 있다. 이들은 - - 독방에 갇혀 의료, 소내취업, 집필권, 도서열독권등이 박탈당하는등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문후유증과 오랜 독거생활,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 테러등으로 수십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93년 4월 30일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이들 중 김성만, 장의균, 황대권 사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구금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한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제적인 책임을 부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 이들 사건을 전면재조사하여 부당한 구금으로 구속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있고 실무위원회의 결정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양심수가 없는가

“남북이 맞대결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넓은 의미의 양심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이를테면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이른바 주사파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양심수의 범주에 둘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97.11.4자 사설 ‘양심수는 많다’)

문 : 공산주의자는 양심수가 아니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나

답 :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표현하다가 구속됐다면 양심수라고 할 수 있다.(1997.11.4자 한겨레신문의 Daniel Ross와의 대담)

#### (4) 양심수의 숫자

YS취임 이후 구속 양심수 현황 (민가협자료)

연도	총수	국보법
93	195	105
94	775	389
95	623	285
96	1,269	494
97	1,198	542(10.1.현재)

“앰네스티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들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에 여전히 양심수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올해(1997년) 6월 18일 발간된 1997년 연례보고서는 한국에는 양심수를 포함해 4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어 있고 과거정권에 의해 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도 최소한 15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국에 양심수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95년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은 한국을 방문한 후 인권위원회에 한국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 - - 여전히 유엔인권기관의 주목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신석호, 월간 WIN 1997.10)

## 6. 김영삼 대통령의 용감한 발언, 그리고 식언

--역사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1983.5.2자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과거의 긴급조치 대신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는 학생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 -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라 할 고문이 이 땅에 만연되는 것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사법부가 증거로 채택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사건보다 학생사건과 반체제활동관련 사건에서 정치범과 양심범에서 가혹하고도 비인간적인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증거로 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7.5.22자 거제도에서 가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조작은폐 관련 기자회견

“대통령은 이 조작극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박군사건을 비롯, 그간의 많은 인권유린사건 및 용공조작사건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수사토록 검찰에 명령해야 할 것이다.”

1987.7.4자 자택 기자간담회

“우선 구속자의 전면석방이 중요합니다. 모든 양심수를 이유 불문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김대중 의장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묶인 모든 사람들을 모두 사면, 복권해야 마땅합니다.”

1987.7.13자 6.29직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

“진정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지향한다면 용공혐의가 있더라도 단 한사람도 빠짐 없이 전원이 석방.사면.복권되어야 한다”

## 7. 결론

“지난 1991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프랑스지부 3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를 제작했다. - - 영화 <실종> <Z>등으로 유명한 코스타 가브라스가 만든 <망각에 반대하여>의 김성만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 김성만씨가 13년째 수형생활을 하는 사이 그의 약혼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어머니 최인화씨는 회갑을 넘기고 말았다. - -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기억은 자꾸 희미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늙어가고 몸이 아파오는데 언제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끼라도 해먹이고 싶은데 - - -’ (신윤덕, WIN 97.10)

“기억되지 않는 정의란 불완전하고 거짓되며 정의롭지 않은 정의입니다. 망각이란 아우슈비츠가 절대적 범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정의입니다. 망각이란 나치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 - 물론 어느 것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의 만남과 증언 때문에 피고인은 죽은 사람을 다시금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한번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 재판은 기억에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Barbie 재판에서의 Ellie Wiezel의 증언)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이다”(미국 법무성 경구)